



** 전북여고 장학생 선발 규정 **

전북여자고등학교

제 1 조 (목적) : 본 규정은 자질이 우수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의욕을 북돋아 줌으로써 자아를 더욱 장양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장학위원회 구성) : 다음과 같이 장학 위원회를 구성한다.

1. 위원장(1명) : 교감
2. 위 원(7명) : 교무기획부장, 연구정보부장, 인성안전부장, 1, 2, 3학년 부장, 장학 담당계

제 3 조 (심의 의결) :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액수를 결정할 때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 4 조 (장학생 종류)

1. 교내 장학생 : 입학성적우수 장학생, 성적우수 장학생, 해외연수 장학생, 특별 장학생
2. 교외 장학생 : 각종 추천 장학생

제 5 조 (장학생 선발요건)

1. 장학생의 종류는 교내 장학생과 교외 장학생으로 구분한다.
2. 교내 장학생의 종류는 입학성적우수 장학생, 성적우수 장학생, 해외연수 장학생, 특별 장학생으로 구분한다.
3. 장학생은 생활지도 규정상 사회봉사 이상의 처벌 사실이 없어야 한다.
4. 성적우수 장학생은 학부모가 소속기관에서 학자금을 받더라도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내장학생]

가. 입학성적우수 장학생(3년 특대장학생)

입학성적우수 장학생은 입학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선발한다.

- ① 중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고입 배정성적의 석차백분율에 의한 석차가 상위 10% 이내인 자, 또는 중학교 성적이 탁월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된 자는 3년 특대장학생으로 한다. (단, 재학 시 이전학기 성적은 전과목 등급평균(단위수 반영)에 의한 석차백분율이 15% 이내로 유지되어야 한다.)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거나 농(어)업인 자녀, 장애인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는 도교육청의 규정에 따른다.

나. 성적우수 장학생

- ① 각 학년별 소속 계열 최종학기 전과목 등급평균(단위수 반영)에 의한 석차백분율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
- ② 선발 인원은 학기별로 학년 학생수 기준 10%이내(특대 5%, 준특대 5%)를 선정한다.(단,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며, 전체 인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2, 3학년 장학생 선발 비율은 인문사회계열과 과학탐구계열의 인원수 비율로 결정한다.(단, 이미 타 장학금을 받는 장학생 결원으로 생긴 장학생 총당은 같은 계열에서 총당하되 장학증서는 수여하지 않는다.)
- ③ 이전 학기 전과목 등급평균(단위수 반영)에 의한 석차백분율 석차 순에 따라 선발한다.(단, 신

입생은 고입 배정성적의 석차백분율에 의한 석차 순에 따라 선발한다.) 동석차일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교과 순위로 하되, 동일 교과 중 단위가 높은 과목 순으로 하여 원점수(소수점)가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

- ④ 특대생은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전액을 면제하고, 준특대생은 수업료를 면제한다.
- ⑤ 학기별 특대생과 준특대생의 인원은 학년 학생수 기준 10% 이내로 한다. (단, 전체 선발 인원은 30명 이내로 하되, 아래와 같이 예외를 둘 수 있다.)
 - 3년 특대장학생이 특대와 준특대에 포함될 경우는 장학생 인원은 학년 학생수 기준 10%로 한다. (단 3년 특대장학생은 특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준특대생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
 - 3년 특대장학생이 특대와 준특대 인원내 포함되지 않고, 이전 학기 전과목 등급평균(단위수 고려)에 의한 석차백분율이 15% 안에만 포함될 경우 장학생 인원내 추가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 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거나 농(어)업인 자녀, 장애인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는 도교육청 규정에 따른다.

다. 해외연수 장학생

- ①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선발하여 해외 문화체험학습의 기회를 부여한다.
- ② 입학성적(고입 배정성적의 석차백분율 기준) 40% + 1학년 1학기 1차고사성적(원점수 총점 기준) 40% + 3월,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성적(국어, 수학, 영어 원점수 총점 기준) 각각 10%를 반영하여 선정한다.
- ③ 1학년 여름방학 중에 실시하며, 장소 및 일정은 훈정장학회의 규정에 따른다.

라. 특별장학생

- ① 예·체능 특기자로 세입금징수 관리지침에 의한 감면 대상자에 한하여 담당 교사가 추천하고 범위와 인원은 학교장이 결정하며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를 면제한다.
- ② 극빈 학생은 학급 담임 교사가 가정환경을 조사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추천하고 학비 감면은 학교장이 결정한다.
- ③ 기타 특정사안의 발생으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 ④ 기타 장학생의 선정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하여 추천한다.

[교외장학생]

- ① 교외 재단 장학생은 당해 장학 재단의 추천 요강에 의하되 성적 우수자 중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 추천한다.
- ② 특별한 기준이 없을 때에는 장학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 6 조 (사무) : 장학생에 관한 제반 사무는 장학 담당계에서 맡는다.

제 7 조 (개정) : 본 규정의 개정은 장학위원회 위원 재적 2/3이상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5년 8월 17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8년 3월 23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